

Forum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11년 8월25일(목)오후2시 / 청어람3실

공동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기신
크르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Center for Cultural Communication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발행일 _ 2011년 8월 25일
발행인 _ 이동원
편집인 _ 조제호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cemk@hanmail.net
www.cemk.org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기윤실 블로그에서 행사 이후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발제자의 동의를 있는 원고에 한합니다.

Forum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11년 8월25일(목)오후2시 / 청어람3실

공동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기신
크리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행사 순서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	프로그램	진행 및 강연자
오후 2:00-2:05	환영과 인사	백광훈 목사 (문화선교연구원 책임연구원)
2:05-2:35	기조발제	남형두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35-2:50	사례발제	조제호 사무처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50-3:40	패널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장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패널 김혜창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오정혁 사무국장(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조성실 목사(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3:40-4:00	질의응답	

목차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발제

1. 기독교와 저작권에 관한 시론(試論) -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07
남형두 교수 _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사례발제

1. 교회 안 저작권 침해사례 이해 12
조제호 사무처장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패널토의 (좌장 : 임성빈 교수 _ 장신대 기독교와문화)

1.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20
김혜창 팀장 _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2.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소개 35
오정혁 사무국장 _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3. 저작권법을 지키면서 교회영상만들기 40
조성실 목사 _ 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 공동주관 단체 소개 46

기독교와 저작권에 관한 시론(試論)

-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¹⁾

남 형 두 교수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01.

여러 해 전 필자는 학교의 강의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가에 관한 글을 교내에서 발행하는 학생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다.²⁾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무분별하게 녹음하고 이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P2P 방식으로 주고받음으로 인해 강의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학생들의 수업태도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글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과 아이디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모의재판대회의 단골 소재가 되는가 하면, 심지어 법무부 홈페이지에 수년 째 올려 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이 글로 인해 목사님들 사이에 논란이 발생했다.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어떤 목사님은 목사들을 상대로 설교 강의를 하는 또 다른 목사님이 수업 시간 중에 자신의 강의를 절대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법무부 사이트에 있는 필자의 위 글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몇몇 목사님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듣고 말 설교(강의)가 아니라고 보아 녹음을 하여 차분히 다시 듣고자 했는데, 강사가 너무나 심하게 저작권 주장을 하더라는 이야기다. 통화 중에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글을 쓴 필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음성에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2007. 5. 23. 기윤실 주최 세미나,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에서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 후 두란노서원에서 펴내는 ‘목회와 신학’(2008. 7.)에 관련 에세이를 실은 바 있고, 이어 관련된 두 편의 논문을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였다.³⁾ 교회에 저작권을 연결

1) 잠언 23:23. 이 글은 2011. 8. 25.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주최 세미나 “한국교회 저작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초 강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월간 <기독교세계> 9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2) 남형두, “강의를 녹음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가?”, 연세춘추 2008. 5. 19.자.

3) 남형두, “성서와 찬송가를 둘러싼 저작권쟁점 연구”, 창작과 권리, 2008년 가을호(제52호); “종교단체와 저작권 - 가사의 것

짓는 것이 흔치 않았던 때라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교회의 정직 운동과 맞물려 교회의 저작권 준수 의식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 지금도 자부심을 느낀다. 그런데 었게 받은 전화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제기된 '교회와 저작권'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02.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Luke)가 저술했다고 되어 있다(누가복음 1:1-4, 사도행전 1:1-2). 이 두 권의 책은 누가가 써서 로마 총독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으로부터 승천 때까지의 사실을 목격한 자들로부터 전해들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후 행적과 제자들의 전도의 삶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대로 저술한 것이다.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하면 이렇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소유권은 데오빌로에게, 저작권은 집필자인 누가에게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편지의 소유권이 수신자에게, 저작권이 발신자에게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편 이 책들의 내용 중 예수님의 가르침과 베드로, 바울 등 제자의 설교를 옮겨 적은 부분은 집필자인 누가 외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저작권이 있을 것이므로 기록자와 설교자 간의 저작권 충돌이 숨어 있다.

03.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가를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작권이 누가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가 죽은 지는 2천 년 가까이 되었을 것이므로 저작권이 살아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성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말 성경은 사실 번역저작물인데, 이는 2차적 저작물로서 원작과 별도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⁴⁾ 가사 번역성경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말 성경이 번역되어 나온 지도 꽤 되었으므로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되었을 법도 하다. 그러나 번역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장의 현대화 작업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⁵⁾ 성경의 번역 작업이 지속되는 한 번역성경의 저작권 분쟁은 종료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일찍이 영국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역(英譯)성경의 저작권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성

은 가이사에게 -", 법조, 2008. 10.(통권 제625호).

- 4)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5) 성서학자에 따르면 성경번역은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채운, "세계의 성경 번역사", 기독교사상, 1993년 2월호(통권 제410호), 10-22면. 실제 우리말 성경은 개역(改譯)에 개역을 거듭해 왔다. 김중은, "한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 기독교사상, 1993년 2월호 (제410호), 23-33면.

경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책’인가 아닌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⁶⁾

04.

찬송가는 성경만큼이나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저작물이지만 저작권법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만한 차이가 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물로서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인데 반해, 우리말 찬송가는 558개의 곡을 선택하여 배열한 일종의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개별 곡들은 가사와 곡이 결합된 음악저작물이다. 한편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곡의 가사는 번역저작물이며, 적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곡은 그 자체가 원작인 저작물이다. 2006년도에 새로 개편된 ‘새 찬송가(21세기 찬송가)’는 기존 찬송가에서 80여 곡이 삭제되고 160개 곡이 추가되었는데, 새 곡 가운데 110여 곡이 우리나라 사람의 창작곡이라고 한다.

찬송가는 수백 곡에 달하는 별개의 음악저작물을 편집한 편집저작물이고 그 개별 곡 상당수의 저작권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찬송가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은 성경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05.

교회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은 성경과 찬송가 외에도 많이 있다. 저작권 시각에서 본다면, 예배와 교회 생활의 일상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저작물 사용이 수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가대에서 사용하는 성가악보 또는 성가집, 복음송가 또는 CCM (Christian Contemporary Music)과 같은 음악저작물이 있는가 하면, 설교집, 성경공부교재, 간증집 및 각종 종교서적과 같은 어문저작물이 있고, 교인관리 및 교회회계관리 등 교회행정 쪽에서 사용되는 각종 소프트웨어로서 교회전용인 것과 일반 오피스용 각종 소프트웨어와 같은 범용성을 갖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있다. 그밖에 최근에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소재로 하는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고, 연극이나 뮤지컬이 공연되기도 하는데, 이는 영상 저작물, 연극저작물 등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잡 다양한 저작물을 크게 분류하면 교회의 사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저작물과 범용적 성격의 저작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회 또는 교회와 관련된 이들이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과 교회 밖의 사람이나 법인이 갖는 저작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분류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교회 사용을

6) 'King James Version 성경'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서 영국 법원은 성경은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일반 책'이 아니라고 한 판결하였는데(Donaldson v. Beckett, 2 Bro. P.C. 129 (1774)), 후에 'New English Version 성경'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성경도 '일반 책'으로서 저작권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Univ. of Oxford and Cambridge v. Eyre & Spottiswoode, 1 Ch. 736 (1963)).

전체로 만들어지거나 교회 또는 교인이 저작권을 갖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을 띠는 경우가 적고 그 반대의 경우는 영리적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었지만, 교회의 사용을 전체로 만든 것으로서 교회 밖의 이용이 거의 없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교회 수의 증가와 대교회의 출현으로 반드시 비영리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면 미국의 저작권자들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저작권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는 조직적으로 교회 저작물을 관리하여 집행하는 미국 단체들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독교세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교회를 상대로 미국 교회저작물 관리단체들이 상당한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06.

도둑질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십계명 중의 하나로서, 도둑질의 대상은 십계명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보이는 유형물’이었겠지만, 오늘날 ‘보이는 재산’(tangible property)보다 훨씬 재산적 가치가 높은 ‘보이지 않는 재산’(intangible property)이 얼마든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특허, 상표, 저작물과 같은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무단복제한 악보를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교회에서 사용한다면, 교회 스스로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07.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8)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음(gospel) 전파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복음 전파 행위에는 복제행위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저작권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작권으로 복음 전파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이는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된다.

08.

교회사를 보면 저작재산권 보호 보다는 저작물이 왜곡되어 유포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써왔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교리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분

7) 십계명 중 제10계명에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라고 되어 있다(출애굽기 20:17). 여기에서 ‘소’, ‘나귀’와 같은 것은 재물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이지 그것만을 탐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둑질의 대상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가 거듭되어 왔는데, 그로 인하여 정통적 견해 또는 교리를 고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정통적 교리는 결국 구체적으로 출판물을 통해 지켜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이 강조되었다면 이는 재산권적 측면보다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저작인격권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09.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잠언 23:23)

성경은 진리를 얻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라고 한다(마태복음 13:44-46). 그러나 그것을 팔지는 말라고 한다. 교회가 사용하는 저작물 중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들이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예외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회 또는 교인들은 자신이 보유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복음전파에 지장을 초래하는 저작권 주장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솔선수범하여 저작권을 지키되 세상을 향해서는 교회 저작물을 자유롭게 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교회 안 저작권 침해사례 이해

조 제 호 사무처장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jehoc@hanmail.net

최근 저작권업체 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증명 또는 고소를 당한 교회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또한, 한미 FTA, 한-EU FTA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저작권 문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외국 저작권업체로부터 직접적인 고소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교회에서 저작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글에서는 이슈가 되었던 교회 저작권 침해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대표적인 교회 저작권 항목인 소프트웨어와 음악, 영상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고, 총론적인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저작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1. 교회 관련 저작권 침해사례 유형

이슈가 되었던 교회 관련 저작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1 : 영상

평창동의 J교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300만원을 K배급업체에 배상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담임목사를 형사고소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 사건의 전후관계는 이렇했다. 2011년 4월 J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P씨가 선한의도에서 잘 알려진 선교영화 “○○○”를 볼 수 있는 카페 주소를 교회 게시판에 링크했는데, K배급업체는 자신들의 영화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 J교회의 당회장을 고소한 것이었다. 다행히 J교회와 K배급업체는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직전 원만한 합의를 도출, 게시판에 영화 링크를 해지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갓스펠공연]

유형 2 : 이미지

분당의 C교회는 얼마 전 J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 고발장을 받았다. 이 교회는 교회의 한 청년에게 홈페이지를 부탁했는데 문제는 홈페이지에 별생각 없이 사용한 J회사의 예수 이미지가 문제가 된 것. 일러스트레이션 회사 J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C교회가 J회사의 예수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20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공문을 보낸 것이었다. C교회는 이에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하고 200만원을 지불하였다. [외주업체]

유형 3 : 소프트웨어

대전의 S교회는 얼마 전 한 장의 공문을 받았다. 내용은 귀교회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어 조만간 실사에 나서 겠다는 것, 그리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 시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S교회는 이 공문에 적지 않게 당황했지만, 당장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바꾸기에는 재정규모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교회용 소프트웨어]

유형 4 : 디자인

주보에도 저작권이 있다. 설교내용이나 사진, 교회로고 같은 주보 안의 콘텐츠 뿐 아니라 이것들을 나열하는 편집자체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좋은 디자인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많아 교회들의 주의를 요구되고 있다. 주보제작업체 대표인 L장로는 지난 2007년 5월 한 대형교회의 주보를 의뢰받아 한 달 동안 디자인 작업을 한 뒤 매주 제작해왔다. 그러나 2008년 6월 교회와의 거래가 끝난 뒤에도 해당교회의 주보는 다른 업체 이름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발행, 이로 인해 교회와 L장로간의 갈등이 촉발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카탈로그나 브로슈어, 시험문제집 등 각종 편집저작물에 대해서 그 안의 내용이나 소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L장로가 만든 주보가 독창성이 있으며 후속 업체가 이를 그대로 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로고 / 홈페이지 디자인 / 폰트]

유형 5 : 무단복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여수 모교회 H목사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50만원형을 선고했다. 순천지원 판결에 따르면 여수 Y교회 H목사는 지난 2009년 4월 2일경 여주시 학동에 있는 모문구점에서 저작권자 P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P씨의 책자 8부를 무단 복사한 것이다.

H목사는 법정에서 개신교에서 이단시하는 특정 교단의 교리를 교회에 알려 교회 신자뿐만 아니라 특정 교단 신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사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은 H목사가 특정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무단 복제된 것은 명백한 사회적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복사전송권]

2. 교회 안 저작권 항목별 가이드¹⁾

1) 소프트웨어 저작권

① 정품 소프트웨어 하나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 한 경우

: 정품 소프트웨어 하나를 구입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약정서에서 허용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 소프트웨어 한 카피를 한 대의 PC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② 컴퓨터 판매자로부터 받은 무상 소프트웨어 서비스

: 보통 컴퓨터를(주로 조립PC의 경우) 구입할 때 판매처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여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OEM 버전(주로 노트북 또는 메이커 PC를 구매할 때 따라오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며, 보통 설치된 PC 이외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이라는 인증 없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경우,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불법일 가능성이 많다. 컴퓨터 판매자로부터 받은 무상 소프트웨어인 경우 정식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인지 확인(예, 시리얼번호 확인 등)하고 사용해야 한다.

③ 개인소유 컴퓨터를 교회업무용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경우

: 컴퓨터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주 용도가 교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교회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1) 본 내용은 200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발간한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 - 교회 저작권 가이드북」의 "저작권 보호 대상 항목별 가이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한 것이다.

④ 개인용으로 허락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교회에서 사용할 경우

: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개인용 또는 가정에서만 사용하도록 허락한 소프트웨어를 교회나 회사에 설치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 프리웨어는 일부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누구나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소프트웨어이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를 교회에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알집, 알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알툴즈프로그램이다.

※ 교회 소프트웨어 관리방안

1.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를 확인하고, 설치된 SW를 확인한다.

- 개인소유 노트북일지라도 주 용도가 교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 컴퓨터 구매 시 설치되어 온 SW라도 정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메이커 PC의 경우 운영체제는 정품일 수 있지만(이 경우도 정품라벨링을 확인해야 한다), 조립 PC의 경우 판매자가 임의로 설치한 SW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불법 SW 사용으로 간주된다.
- 프리웨어 SW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개인에게는 적용되지만,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인 알집, 알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알툴즈프로그램 등이다.

2. MS오피스, 한글 등 구매해야 하는 SW를 꼭 설치해야 하는 컴퓨터를 파악한다.

- 외부(총회본부 등)와의 호환성을 위해 꼭 MS오피스, 한글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 MS오피스, 한글제품군의 경우 다량(약 5카피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설치 CD가 포함되어 있는 날개 박스제품보다 CD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선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고, 각 회사보다 아주 다양한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 구매한 SW의 경우 정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보통은 판매회사에 정품인증을 해 놓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산서 등)를 분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음악저작권

① 정식 출판 성가를 구입하여 복사

: 정식으로 출판된 성가집을 구입하여 그것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에 침해가 된다. 성가집은 꼭 연주하고자 하는 인원수만큼 정식 출판물을 구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시중 서점에서 파는 악보라 할지라도 P.D 곡을 제외한 저작권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가집을 구입할 때 반드시 'Copyright ©' 가 승인된 출판물을 확인하고 인원수에 맞게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P.D.(Public Domain)곡은, 너무 오래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곡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곡을 말함.)

② 시중에 나와 오래되거나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곡의 복사

: 우리나라는 1987년에 발효된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협약에 따라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산정하여 1961년(2011년 현재를 기준으로 50년간이라 했을 때) 이후 그 저작자가 사망했거나 공표된 저작물은 모두 보호 대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 나와 오래되었거나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하여 곡을 복사하였다가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저작권 유효 기간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우리나라는 2011년 6월 30일 법개정을 통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렸다. 단, 시행일은 2년후인 2013년 7월 2일부터이다)

③ 비매품이지만 저작권이 있는 곡의 복사 편집

: 비매품이라 할지라도 저작권이 있는 곡을 기도모임이나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때의 사용을 위해 복사 재편집하는 경우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작품에 있는 저작권자나 작곡자 이름을 확인하거나 저작권 관리업체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④ 구입한 음반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 인터넷에 공유

: 음악 음반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자신의 PC에 저장, 또는 MP3플레이어에 담는 것과 같은 사적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MP3 파일 등을 올리는 것은 배포목적이 아니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⑤ 구입한 음반/음원을 편집하여 개인적 용도로만 나눠 쓴 경우

: 자신이 구입한 정식 음반/음원을 사적인 목적으로 일부 복사하여 나눠 쓴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식 음반/음원을 여러 장 복사하여 익명의 사람들에게 다량 배포하거나, 배포목적이 아니어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⑥ 구입한 음반을 교회에서 사용할 경우

: “판매용” 음반을 교회에서 감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단, 공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영상 / 이미지 저작권

① 개인이 직접 구매한 이미지·영상을 복사하여 공유한 경우

: 개인이 구매한 이미지나 영상을 사적인 이용에 한해 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대중의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사·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업로드 시킨다든지, 이미지를 복사하여 주보에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② 단순 링크가 아닌 자료(삽입) 링크

: 자료를 이용할 웹사이트 대문이나 게시판에 거는 단순 링크는 파일의 복제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 교회의 자료인 것 처럼 프레임 안에 곧바로 뜨게 하는 경우(framing link, 프레임 링크)나,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 했을 때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 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경우(embedded link, 임베디드 링크)는 독자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론사의 기사를 복사하여 자신의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③ 구매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항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감상용으로 구매한 이미지를 교인들에게 전시한다든지 또는 영상물로 가공하여 상영하는 경우는 저작자가 밝힌 목적 외의 이용으로 모두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자가 밝힌 목적 하에 이용해야 한다.

④ 이미지 중 일부만 잘라내어(트리밍) 사용하는 경우

: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은 저작권으로 저작자에게 보호되는 내용이다. 이것을 타인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부 내용만을 잘라 내거나,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⑤ 비영리를 목적으로 상영할 경우(반대급부가 없는 경우)

: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구입하여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개상영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중에 상영하는 것은 괜찮다. 단, 시설에 따라 발행된 지 6개월 이상 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 상영할 수도 있다.(예. 사회복지관)

⑥ 설교나 예배시간에 영화나 CF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

: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나 CF 등)의 일부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단, 비영리적이어야 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3. 교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²⁾

1. 크리스천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가 필요하다.

작년부터 네이버 이미지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블로그/카페에서 저작물의 공유를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을 허락한다는 표시를 하는 자유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ce: 이하 CCL)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보완할 점이 있지만, 많은 네티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많은 교회 관련 저작권자들이 상업적인 이용만 아니라면 출처를 밝힌다는 전제하에 교회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 CCL 제도를 잘 활용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유이용사이트와 유사한 크리스천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만들어 각 교회들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저작물을 손쉽게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

2. 저작권(물) 구매비를 예산에 책정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비품(컴퓨터, 빔프로젝트, 성가대 가운, 악기 등)의 경우 예산을 책정하거나, 특별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구입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비품(소프트웨어, 악보 등)의 경우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예산책정에 소홀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특별히 저작권(물)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 또한 낮아 더 소홀하기 쉽다.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잘 고려하여 그것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여 실제 구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본 내용은 월간 <기독교세계> 9월호에 기고한 “교회 안 저작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의 일부이다.

3.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마5:41)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저작권 사용 의지이다. 한푼 들이지 않고 이용하던 저작물을 가격을 낮춘다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더라도 공정한 사용 의지가 없다면 헛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아무리 좋은 공개소프트웨어를 알게 되더라도 익숙한 것을 버리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헛것이 될 것이다. 실제 기윤실에서는 2008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한글과컴퓨터사 등과 종교기관용 라이선스 개발에 합의하고, 실제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 등을 종교기관용 라이선스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매부진으로 인해 6개월만한 라이선스 정책이 취소되고 말았던 경험이 있다. 마태복은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유명한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를 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저작권 문제에 있어 우리에게 십리를 가는 것은 무엇일까?

《기억하기 쉬운 저작권 준수 수칙 4조항》

1. 저작권을 보호하는 정식으로 출간, 판매용 저작물을 사용합니다.
2.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하고,
3. 저작자가 밝힌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4.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반대급부 없이)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¹⁾

김혜창 팀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hyechang@copyright.or.kr

1.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활용

교회에서의 여러 행정업무 중에도 많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보통의 회사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들이 교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PC의 기본적인 운영체제(OS)인 Microsoft 'Windows XP'를 비롯하여 '흔들 2005'나 워드·엑셀과 같은 Microsoft사의 Office 프로그램 등은 교회에서 주보를 편집하거나, 예결산 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최근에는 교회안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영역에서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찬송가의 가사를 빔프로젝터로 띄울 때 이용되는 '한컴 슬라이드'나 MS의 'PowerPoint'와 같은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Windows Movie Maker'나 'Adobe Premiere'와 같은 동영상편집 프로그램도 없어서는 안 될 소프트웨어로 자리잡았다.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의 특성상 'NoteWorthy Composer'나 'Encore'와 같은 악보편집 프로그램의 활용도 많다.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에서는 '나모웹에디터'·'드림위버' 등의 HTML편집기나 'Adobe Photoshop'과 같은 그래픽편집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만 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들도 있다. '디모데교회관리'와 같은 교적관리 프로그램이나 '미션디럭스바이블'과 같은 성경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주석서나 예화 모음집 형태의 소프트웨어와 성경지리·성지순례화보 등의 자료형 소프트웨어도 종종 활용되고 있다. 찬양집 편집용으로 개발된 '동그란 많은물소리'와 같은 소프트웨

1) 본 글은 2007년 5월 3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주최 "한국교회와 저작권을 생각한다" 토론회 발제문을 발제자의 허락을 받아 전재한 것이다. 당시 발제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SW정책개발팀장으로 근무했다.(편집자 주)

어도 있다. 성경을 선교지 언어로 번역하는데 있어 문법분석 및 사전편찬 등의 용도로 특별하게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이처럼 교회안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은 경우에 불법복제되고 있어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과 이로 인한 폐해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특히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실태를 살펴본 후 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및 폐해

(1) 일반적인 불법복제 현황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2006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은 전년도 보다 1% 떨어진 45%이며,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4억4000만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세계 평균 불법복제율은 35%이다.)

직접 피해를 입는 저작권자들의 통계이므로 다소 과장은 있겠으나, 미국(25%), 일본(25%) 등 선진국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불법복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 국	48%	50%	48%	46%	46%	45%
일 본	37%	35%	29%	28%	28%	25%
중 국	92%	92%	92%	90%	86%	82%
미 국	25%	23%	22%	21%	21%	21%

(BSA/IDC, 2007.5)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폐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성행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국내 소프트웨어업체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기술개발 의욕을 상실시켜 산업발전 자체를 저해하게 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

2) 주예노, '성경번역의 도구들(II)', 난곶방언으로(2007.3/4), 16-19쪽.

3) 2009년 통계로는 국내 SW불법복제율이 처음으로 세계평균인 43% 이하인 41%로 감소했다.(미국 20%, 일본 21%, 대만 38%, 중국 79%) 2009년도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피해규모는 약 5,7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연례보고서 BSA/IDC, 2010.5(편집자 주)

의 침체는 다른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례로 1999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상 CD롬 드라이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2000년 'IR52 장영실상'까지 수상한 한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1000만명이 사용할 만큼 인기있는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유료로 판매한 제품의 개수는 200만개에 불과했다고 한다. 해마다 2억~3억원씩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불법복제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현실을 두고 안철수 사장은 "설사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해도 성공하기 힘들다" 고까지 했다. 전국민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BSA와 IDC가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2009년까지 국내 SW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경우에 국내 IT산업이 48%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2조9000억원 규모의 GDP 상승효과와 함께 1만8000여개의 신규 고용 창출까지도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원인

이렇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만연한 원인으로서는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아 불법복제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가 이를 장려하는 관용적 사회 분위기를 들 수 있다.

물론 잘 갖추어진 초고속 인터넷망과 복제가 쉬운 디지털적 특성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불법복제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높은 소프트웨어의 가격도 불법복제가 줄지 않는 이유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소프트웨어의 구매를 꺼린다면 그나마 팔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가격을 더 올리게 되어 소프트웨어 가격과 불법복제 간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르는 창작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불법복제의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⁵⁾

3.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현재까지 특별히 교회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을 조사한 자료는 없으므로,

4) '벤처 죽이는 불법소프트웨어', 매일경제(2006. 8.16).

5) 본 토론문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에 대하여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산업발전이라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였다. 일반 법학에서 절대권으로 파악하는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도 성경의 희년사상에 근거하여 새롭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 것처럼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와 원리에 대해서도 성격적 견해에 입각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을 위해 개인적으로 시행한 인터뷰에 기초하여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실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⁶⁾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기업 등에서의 불법복제 현황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이다. 10여대 안팎의 PC와 노트북을 갖춘 어느 교회의 경우를 예로 들면 컴퓨터와 관련된 작업은 주로 교회 청년들 몫이고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청년들이 알아서 구해와 설치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실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불법복제란 의미이다. 대기업이나 PC전문제조업체의 완제품PC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OS 등 필수적인 소프트웨어가 번들(bundle)로 제공되지만 조립PC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조차도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의 교회의 경우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불법복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잘 다루는 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과 다르지 않게 P2P나 와레즈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복제 파일을 구하고, 특히 신학교마다 이른바 ‘보따리 장수’들이 있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담은 CD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독교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불법복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현재 P2P 사이트 등에서 Lock과 같은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파일이 무단으로 전송되고 있으며, 이에 해당 업체에 검색어 금지어 설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차단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물 사용자가 정품 사용자의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등록번호’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USB Lock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여러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허위의 Lock 분실신고 등을 통해 Lock을 재교부 받아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를 위한 용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여서 주된 이용자들이 목회자나 신학생들인데 이들의 불법복제로 인해 느끼는 실망도 크다고 호소한다.

4.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감소 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회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자 측면에서 교회안에서도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교회의 예에서 보았듯이 교회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층이 주로 청

6) 토론을 위해 교회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몇몇 회사들과 소프트웨어 수요자인 목회자·신학생과 전화 등을 통해 인터뷰를 하였다.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향후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년들인 반면에 교회 예산의 집행과 관리는 집사 · 장로 수준에서 이루어지므로 여기에 놓인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청년층이 우선 저작권 보호 의식을 가지고 예산배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적인 필요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에 불필요한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값비싼 소프트웨어 대신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보다 저렴한 가격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저작권자가 조건없이 사용을 허락한 'Freeware'나, 설치 후 10일간 또는 20회 사용을 허락하는 식으로 사용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이 붙는 'Shareware' 등을 잘 찾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고 마음에 드는 'Shareware'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사용을 위해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OS로 Linux를 이용하거나 상용 오피스 프로그램 대신 '오픈 오피스' 등을 이용하면 비용지급의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의 공급자인 저작권사 측에서도 비영리단체인 교회에 대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학교나 학생에 한하여 저렴하게 공급되는 '아카데미판'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개교회 차원에서 수요가 작으므로 노회나 교단 차원에서 라이선스 방식으로 공동 구매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영세한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회 규모에 따라 재정 정도를 고려하여 가격을 차별화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실제로 한 교적관리프로그램의 경우에 교인수 1,000명까지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의 교인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상용화하여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

* 25~34페이지의 <2011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동의하에 일부 전제한 것입니다.

교육홍보 2010-129

2011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

2011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라인

2010. 12.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II. 소프트웨어 관리

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해

가. 소프트웨어의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련 자료를 의미한다.

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의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에 의해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자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필요에 의해 이들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권한을 보통 라이선스(License, 이용허락권)라고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저작권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받는 것이다.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류

가. 사용자수 기준 라이선스

(1) IPC 1Copy 라이선스

가장 일반적인 라이선스로 PC 기반의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피별(per copy), 즉 1대의 PC에

1개의 복사본 사용을 기준으로 판매된다.

(2) 동시 사용(Concurrent usage) 라이선스

동시 사용자의 수를 제한하여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제한다.

(3) 사이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에 이용범위(국가, 분사 및 지사 등)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라이선스를 말하며 사용 기관은 라이선스 받은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래에는 이용범위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연간계약 등의 특정 계약을 맺는 기 관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동안 해당사이트 내 사용자수의 범위에 관계없이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인정하는 라이선스 형태로 발전되었다.

나. 업그레이드에 따른 라이선스

(1) 버전 업그레이드(Version upgrade) 라이선스

동일 제품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었을 때에 하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로 가장 흔한 업그레이드 방식이다. 이때 하위 버전의 라이선스는 새로운 버전의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후에는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2) 경쟁 업그레이드(Competitive upgrade) 라이선스

경쟁사의 제품을 기반으로 한 업그레이드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혜택을 준다. 가령, 한글과컴퓨터사는 사용자가 마이 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면 한글과컴퓨터사의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발행해 준다.

(3) 언어 업그레이드(Language upgrade) 라이선스

추가적인 언어 기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다. 가령, 영문 제품을 기반으로 한글제품 사용 권한을 취득하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4) 인슈어런스 업그레이드(Insurance upgrade) 라이선스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모든 최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선스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우 SA(Software Assurance)라는 이름으로 복잡한 개별적인 업그레이드(VUP, PUP, LUP, UA) 대신 사용할 수 있다.

(6) 기술보증(Technology guarantee)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임박한 경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현행 버전의 구매자에게 제2회 제공하는 라이선스다.

다. 공급 형태별 라이선스

- (1) 패키지(Package) 라이선스
 CD 매체와 설명서 등이 박스 안에 동봉되어 포장된 제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비싸게 판매되며,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 (2) 중소규모 볼륨(Low volume) 라이선스
 사용자가 등록되는 라이선스로 설치를 위한 매체는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User 이상 구매 시 가능한 라이선스다. 한글과컴퓨터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오픈 라이선스(Open license)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 (3) 대규모 볼륨(High volume) 라이선스
 수백 대 이상의 대규모 PC를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되는 라이선스이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와 서명이 삽입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한글과 컴퓨터사의 ITA, 마이크로소프트사의 EA 등이 있다.

(4)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나 이상의 공급업체가 원격지에서 보유, 제공,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공급업체는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거나 월, 년 단위의 이용료를 낼 수도 있다.

라. 사용제한에 따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1) 셰어웨어(Shareware) 소프트웨어
 보통 무료로 다운로드 받거나 사용 가능하지만 기능이나 이용기간 등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때로는 트라이얼 버전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통 이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사용허락 범위에 주의하여야 한다. 평가판 소프트웨어나 에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사용에 일정한 조건과 제한이 있다는 의미에서 셰어웨어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프리웨어(Freeware) 소프트웨어
 무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프리웨어는 이용기간이나 기능의 제약은 없지만 이용목적이나 사용자를 구분 짓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개작 및 배포의 허용여부나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시에는 널리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3) 번들(Bundle) 소프트웨어
 다른 기기(하드웨어)와 묶어서 일체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보통 컴퓨터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를 구매할 때 부속물로서 함께 판매되고 있다. 해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하드웨어에 설치할 때에는 라이선스를 인정받지 못한다.

(4)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방식의 소프트웨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생산시 소프트웨어가 부착되어 같이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OEM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보통 하드웨어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OEM방식의 소프트웨어는 메이저 제조사에서 제품 생산에서부터 OEM방식으로 생산 되는 경우도 있지만 COEM(Commercial OEM)방식처럼 조립 PC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공히 OEM방식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EULA(End User License Agreement)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최종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컴퓨터 제조업체와 최종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소프트웨어
 누구든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취미나 연구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여기에 주로 해당된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도 이 영역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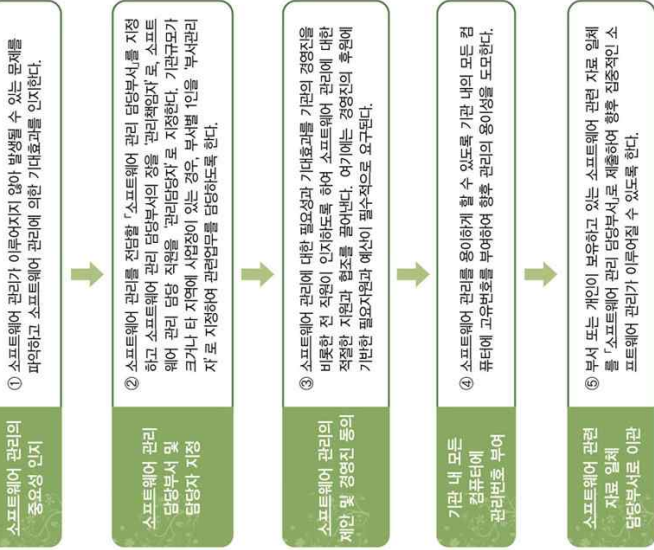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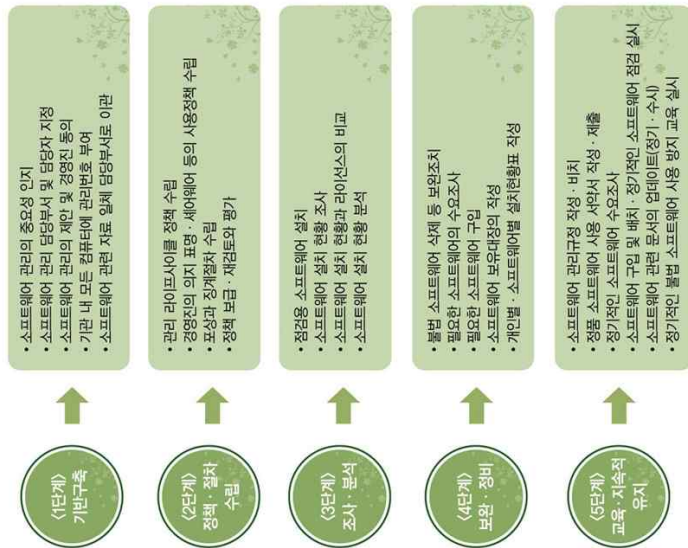
가. 1단계 - 기반 구축

1단계는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소프트웨어 관리의 중요성을 전 직원에게 인지시키고 소프트웨어 관리의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관리는 각 기관의 규모, 업무특성 등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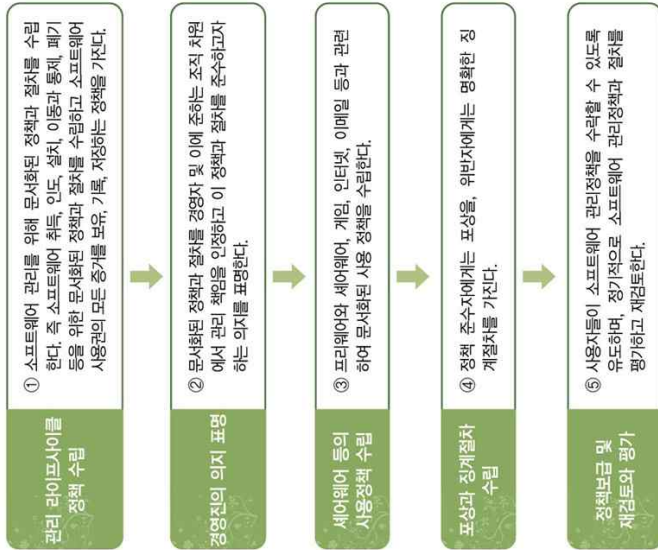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 윤리규약

나. 2단계 - 정책과 절차 수립

2단계는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단계로 우선 전체 소프트웨어 관리 라이프사이클을 수립하고 세어웨어 소프트웨어 포상과 징계절차,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정책보급과 이를 재평가하는 단계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다.



소프트웨어를 장당한 권한 없이 복제하거나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우리 기관의 표준적인 업무와 기업 관례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복제 행위와 계약위반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관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약을 마련한다.

1. 우리 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권한 없는 소프트웨어의 복제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2. 우리 기관은 합법적인 취득과 배포 절차를 통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공급할 것이다.
3. 우리 기관은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모든 라이선스 계약과 조건을 준수할 것이다.
4. 우리 기관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정과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다.
5. 우리 기관은 현 규약과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1년 00월 00일

(주)○○○○ 대표 ○○○서명



점검용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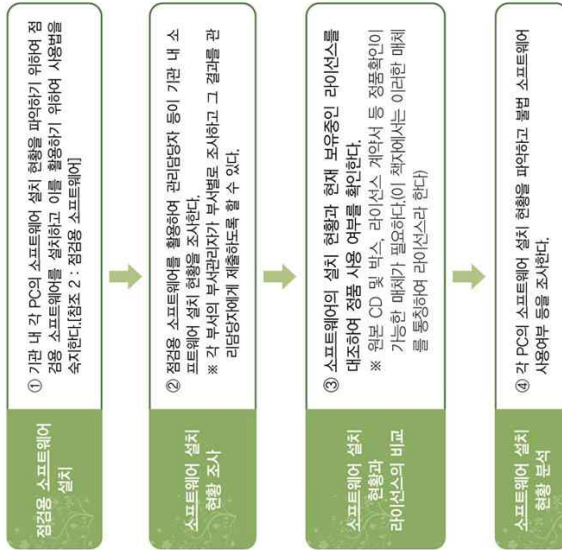
-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Inspector v6.5 및 Net-Inspector v3.0)란?
 -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자가 점검용 소프트웨어(Inspector v6.5)와 네트워크 기반 점검용 소프트웨어(Net-Inspector v3.0)가 있음
 - 자가 점검용 소프트웨어(Inspector v6.5)란?
 -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USB 등의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독자적(stand-alone) 형태로 점검 및 취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는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말함
 - * Inspector v6.5 사용법 : <http://www.itsam.or.kr/inspector/UMorgue.jsp> 참고
 - 네트워크기반 점검용 소프트웨어(Net-Inspector v3.0)란?
 -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에서 네트워크(TCP/IP)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는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말함
 - * Net-Inspector v3.0 사용법 : <http://www.itsam.or.kr/inspector/UMorgue.jsp> 참고

□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 소개

제 공	구 분	사이트(제공자)
한국저작권위원회	Inspector Net-Inspector	www.copyright.or.kr 또는 www.itsam.or.kr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Click	www.spcc.or.kr/웹상에서만_이용_가능

다. 3단계 - 조사·분석

3단계는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단계로 현재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사하기 위하여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기관 내 소프트웨어 관리 상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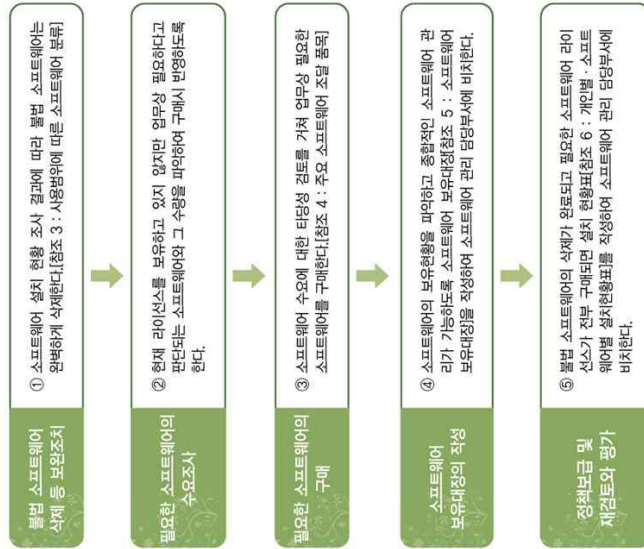
사용범위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종류 구분	상용 (Business SW)	셰어웨어 (Shareware)	프리웨어 (Freeware)	번들 (Bundle/OEM)	공개 SW (Open Source)
무료	X	O	O	X	O
유료	O	O	X	O	O
소스공개	X	X	X	X	O
내용	상용	실행, 실행해수, 사용대상, 기능, 복합 제한	무료배포	하드웨어 가격에 포함	소프트웨어의 자유사용가능, 공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배포시에 대부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음
Example	대부분 (Windows, AutoCAD, Photoshop, 한글오피스 등)	V2가, 일직, 드림위버, 플래시, 팜7만 등	빙핀, 소리바다, Winamp, Acrobat Reader	MS- Windows HP-관콜2002, 삼성-휴민정음 등	Linux, Netscape



라. 4단계 - 보완·정비

4단계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보완조치를 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단계로 소프트웨어 점검에 따라 파악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고 소프트웨어 관리대상 등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 자주 사용하는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 셰어웨어 소프트웨어

(2010.11 기준)

종류	소프트웨어명	사용 조건	비고
입출	편집	제한없음	
	변환기	제한없음	
	디지	제한없음	
	WinRAR	납부제한(40일)	
	WinZip	납부제한(45일)	
	7-zip	제한없음	대부분이 GPL
	인출시대	개인용 무료	개인 용과 기업 용
	인출시대	개인용 무료	개인 용과 기업 용
	인출시대	개인용 무료	개인 용과 기업 용
	인출시대	개인용 무료	개인 용과 기업 용
뷰어	인원View	개인용 무료	
	ACDSee	납부제한(7일/30일)	비상업적 용도로 무료 이용 가능
	한글오피스뷰어	개인용 무료	
	AdobeReader	제한없음	
	PowerPoint Viewer	제한없음	
	Excel Viewer	제한없음	
	Easy Viewer	제한없음	
	Dwg TrueViewer	제한없음	
	GMP	제한없음	
	Paint.NET	제한없음	
이미지	PhotoScape	제한없음	GPL, 리눅스 및 윈도우 버전
	Inkscape	제한없음	NET Framework 설치, 한글서체
	일 GIF	제한없음	GPL, SVG 기반
	Adobe Photoshop	납부제한(30일)	
	FileZilla	제한없음	
	SecureCRT	납부제한(30일)	
	FlashFXP	납부제한(30일)	
	SecureFX	납부제한(30일)	SSH2 지원
	SmartFTP	납부제한(30일)/개인용 무료	
	PuTTY	제한없음	GPL, SSH/Telnet/Brin 프로토콜
통신	Send-U	납부제한(30일)	
	UltraVNC	제한없음	GPL, 원격제어
	Survo FTP	제한없음	
	LeapFTP	납부제한(30일)	
	Altera ID	제한없음	
	일 FTP	개인용 무료	
	Ultraedit	납부제한(30일)	
	EditorPlus	납부제한(30일)	국/영문판
	Acroedit	제한없음	
	EasyPad	제한없음	

종류	소프트웨어명	사용 조건	비고
Office	OpenOffice	제한없음	GPL
	LotusSymphony	제한없음	ODF 지원, OpenOffice 기반
	ThinkreeOffice	납부제한(30일)	온라인 서비스와 별도 판매
	ThinkreeOffice Online	제한없음	웹오피스, 추가 서비스에 따라 유료, 향후 유료화 가능
	GoogleDocs	제한없음	웹오피스
	제한없음	제한없음	
	OxygenOffice Professional	제한없음	
	Kingsoft Office	제한없음	
	SoftMaker	제한없음	
	일	개인용 무료	개인 사용자만 무료
Antivirus	일	제한없음	가용에서 일일 변경
	일	개인용 무료	
	일	개인용 무료	
	일	개인용 무료	
	일	개인용 무료	
	일	개인용 무료	
	일	개인용 무료	
	일	개인용 무료	
	일	개인용 무료	
	일	개인용 무료	
PC관리	일	납부제한(30일)	
	일	제한없음	일시미인, 레지스트리의 검색/삭제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화면캡처	일	제한없음	GPL, 리눅스, 맥용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일	제한없음	

* GPL (General Public License),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NU의 라이선스, 자유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이며, 남은 위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SPL (Shareware License) : 시범용 라이선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공개된 소스코드를 수정 및 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원래 의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아니다.
 SVG (Scalable Vector Graphics) : 2차원 벡터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한 XML 기반의 파일 포맷.
 ODF (OpenDocument Format) : ISO/IEC 국제 표준 문서 포맷 중 하나.



소프트웨어 보유대장



담당 부서	
작성 일자	

관리 담당자	(인)	(인)
--------	-----	-----

소프트웨어 고유번호	자회사	사명	시도	시/군/구	소재지	도입일자	도입유형	라이선스 유형	라이선스 계약기간	서비스 계약기간	계약/납부 담당부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예산회계시스템 등에 자산으로 등록시의 고유번호로 소프트웨어 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기준이 됨

② 예산회계시스템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구체적 버전까지 명기

③ 설치원본 또는 라이선스에 기재된 고유번호

④ 최초 도입시의 버전을 구체적으로 명기(출시시기 및 패키지 구성 식별)

⑤ 무상 업그레이드, 패치 등으로 실제 사용가능한 상위버전(또는 하위버전 사용가능 여부)

⑥ 볼륨, 패키지, 다운로드 등으로 구분

⑦ 실제로 설치되어 사용 중인 수량

⑧ 영구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는 날짜를 명기

⑨ 업그레이드 가능 기간(또는 업데이트 등의 기술지원)

⑩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로 라이선스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인(소프트웨어)별 설치현황표



작성 일자	
부서	
PC고유번호	①
사용자	② (인)

관리 담당자	(인)	관리 책임자	(인)
--------	-----	--------	-----

순번	소프트웨어 고유번호	소프트웨어명 (및 버전)	설치일	라이선스 민보일	유형		비고
					상용	라이선스/개인 구매	
1	-	WindowsXP(Home)	2010/12/20			○	
2	xxxx-000	MS-Office2007(Pro)	2010/12/20			○	
3	xxxx-000	한글2007	2010/12/20	2010/12/10			
4	xxxx-000	VJ Internet Security 7.0 Platinum Enterprise	2010/12/20			○	
5	-	Nero-OEM	2010/12/20			○	
6	xxxx-000	Photoshop CS3	2010/12/20			○	확인
7	-	별칭 3.0	2010/12/20			○	
	③	④	⑤	⑥	⑦		

총 7개 소프트웨어 사용 중

① 예산회계시스템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로 PC관리의 기준

② PC 및 해당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실제사용자

③ 예산회계시스템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

④ 예산회계시스템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

⑤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

⑥ 프리·웨어는 관리담당부서에 사용가능 여부 확인을 거친 후 사용

⑦ 개인적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관리부서의 허가 후 사용가능하며 소프트웨어 원본은 사무실에 비치(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 확인 필요)

소프트웨어별 설치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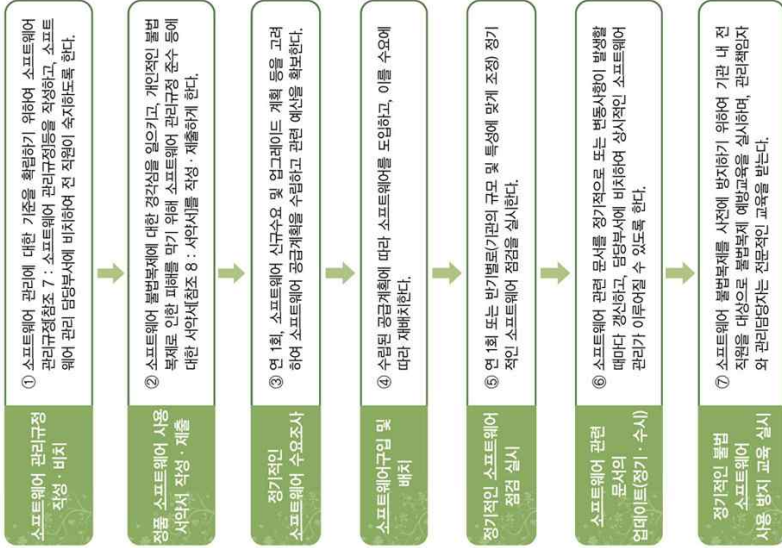
관리 담당 자	관리 책임 자
(인)	(인)

순번	소프트웨어 고유번호	소프트웨어명 (및 버전)	PC고유번호	사용자	설치일	서명
1			xxxx-001	김OO	2010/12/15	(인)
2			xxxx-002	이OO	2010/12/20	(인)
3			xxxx-003	최OO	2010/12/20	(인)
4			xxxx-004	박OO	2010/12/05	(인)
5	xxxx-000	MS-Office2007(Pro)	xxxx-005	정OO	2010/12/05	(인)
6			xxxx-006	홍OO	2010/12/18	(인)
7			xxxx-007	유OO	2010/12/20	(인)
8			xxxx-008	김OO	2010/12/10	(인)
9						(인)
10						(인)
11	xxxx-000	Photoshop CS3				(인)
12						(인)
13						(인)
14						(인)
15	①	②			③	(인)
16						(인)
17						(인)

- ① 예산화계시스템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
- ② 예산화계시스템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
- ③ 개인별 설치현황표의 설치일과 일치

마. 5단계 - 교육·지속적 유지

5단계는 교육 및 지속적 유지 단계로, 내부규정 등을 정비하고 소프트웨어 수요 조사 및 구매·점검·관련 교육 등을 주기적 또는 필요시 반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한국교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패널토의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소개

오 정 혁 사무국장 |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digiman8@paran.com

對外秘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소개

- Korea Church Copyright Association -

2011년 8월 25일

한 국 교 회 저 작 권 협 의 회

사 무 국



“한국 교회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CONTENTS -

- 1 KCCA 설립을 위한 준비 : 2010~2011년
- 2 설립 배경 및 목적
- 3 KCCA 역할과 기능
- 4 진행 로드맵

KCCA 설립을 위한 준비 : 2010년 주요 활동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KCCA : Korea Church Copyright Association’ 에서는 지난 2010년, 진도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이후 두 번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교회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주요 교회들의 뜻을 모았습니다.

2010년 7월, 포럼 개최 : “한국 CCM 저작권 어떻게 할 것인가?”



2010 진도 국제 씨+ 뮤직페스티벌 특별행사로 기독교문화성숙을 위한 포럼이, “한국 CCM 저작권,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를 가지고 7월 29일 진도가계해수육장 성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10년 9월~10월, 주요 교회 1,2차 간담회 개최



1차 : 2010.9.10

- < 11개 참여교회 >
- ❖ 강북제일교회
 - ❖ 새에덴교회
 - ❖ 남서울비전교회
 - ❖ 안산동산교회
 - ❖ 남서울은혜교회
 - ❖ 여의도순복음교회
 - ❖ 분당우리교회
 - ❖ 영락교회
 - ❖ 사랑의교회
 - ❖ 지구촌교회
 - ❖ 새로남교회
- (가나다순)



2차 : 2010.10.8

KCCA 설립을 위한 준비 : 2011년 상반기까지 주요 활동

포럼과 두 번에 걸친 교회간담회 이후 가칭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KCCA)'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그 결실을 맺어, 지난 3월 마침내 KCCA 설립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기에 이르렀습니다.

KCCA 설립을 위해 다섯 분의 공동설립위원장께서 귀한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KCCA가 한국의 5만여 교회 전체를 섬기는 데, 든든한 지주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2011년 상반기, KCCA 설립준비위원회 주요 활동

1. 설립준비위원장 간담회 개최
2. 사무국 설치, 사무국 인선
 - 초대 사무총장 박수광목사, 사무국장 오정혁, 그외 자원봉사자로 구성
3. KCCA 중앙운영위원회 모임 개최
 - 명성교회, 지구촌교회, 높은뜻연합선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각 실무자 파견
4. 활동 : 법률자문을 위한 자문변호단 선임, 찬양저작권협회 협의 시작, KCCA 회원교회 홍보 등.

- 4 / 8 -

설립 배경 및 목적

설립 배경 : 변화의 흐름

- **저작권 인식의 강화**
빠른 변화 속에 한미FTA 체결은 교회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회의 사회적 책임 확대**
최근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신뢰회복을 위한 교회의 능동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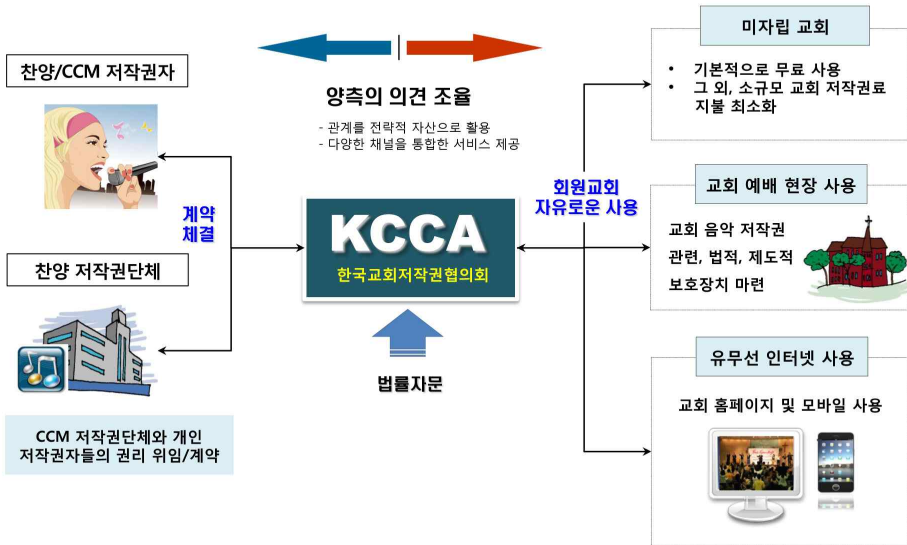
한국교회저작권협의회 설립 목적

1. 한미 FTA 체결 이후 비화될 교회 저작권 관련 법적 위험을 시급히 알리고 예방해야 할 시점입니다
 - 현재 한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미국 찬양 저작권협의(CCLI)가 한국 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2. 한국교회가 연대하여 저작권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합니다
 - 개별 교회가 감당하기 버거운 여러 저작권 분쟁 소지 해결을 위하여 공동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운동입니다
 - 교회의 저작권 의식 강화와 계몽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신행일치 信行一致, 도덕적 자부심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4. 기독교문화진흥을 위한 귀중한 주춧돌을 놓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 저렴하면서 합리적인 저작권료 지불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한국교회가 그 실질적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5 / 8 -

KCCA 역할과 기능 : 운영 모델

한국교회저작권협회는 우선 회원 교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찬양/CCM 음악에 대해 저작권 단체 및 저작권자들과 직접 대화, 협상함으로써 교회가 원하는 찬양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 6 / 8 -

KCCA 역할과 기능 : 활동범위와 FTA 체결 후, 우려사항

한국교회저작권협회의 역할과 활동범위

- ① 한국교회의 입장에서 서서 찬양음악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대행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 ② 합리적인 저작권료를 산출하여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 ③ 찬양 저작권자와 교회의 선한 중재자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활발한 찬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체결이 한국 교회에 미칠 우려사항

소송의 위험 발생	지적재산권 관련법이 대폭 강화되어 미국 저작권 단체로부터 한국 교회가 소송 당할 우려와 함께 특히, 소송의 주체가 담임목사가 되어 모든 법적 책임을 강요 받을 우려가 높습니다
교회의 도덕성 실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회가 법적 책임 여부에 휘말림으로써 한국교회 신뢰 실추가 우려됩니다
높은 저작권료 부담	미국 저작권 단체가 한국 교회를 상대로 찬양 저작권료를 직접 청구하게 되는 상황 하에서, 한국교회저작권협회가 없을 경우 개별 교회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저작권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찬양 음악의 종속화	현재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국 찬양곡의 비율은 절반이 넘는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 단체에 직접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 찬양음악의 종속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 7 / 8 -



저작권법을 지키면서 교회영상만들기

조 성 실 목사 | 전 교회영상네트워크 대표
choross@hanmail.net

어느 교회 영상사역자의 고민

얼마 전 신문기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본 뒤로, 앞으로 만드는 영상은 꼭 저작권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영상도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쓰이는 영상인데 왠지 저작권을 어기며 영상을 만드는 것이 마음속으로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첫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영상에 사용할 십자가 사진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해야 할지가 막막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멋진 사진을 골라 넣었겠지만, 저작권을 지키려 하니 아무 사진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부랴부랴 예배당으로 달려가 본당의 십자가를 찍어 넣었지만,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습니다. 영상 중간중간마다 사용했던 멋진 영상 소스들, 화면전환 효과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모두 정식으로 구매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경음악을 넣고 싶었지만 역시 아무런 음악도 쓸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즐겨 쓰던 폰트조차도 유료 폰트라 마음대로 영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음부터 잘 지킬게요. 이번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작권법을 지키면서 교회 영상 만들기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 가면서 교회에서도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영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매체가 가

지는 복잡적이고 대중적인 특성상 저작권 침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사진 한 장, 효과음 하나, 심지어 폰트까지도 모두 저작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회영상은 혼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중 앞에서 상영되어야 하고, 게다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홍보, 자료보관 등)로 온라인상에 업로드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회영상의 A부터 Z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까지 느껴집니다. 과연 저작권을 완벽히 지키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영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영상이라는 것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을 이해해야 하는데 첫째는 “비영리적”이라는 점입니다. 교회영상은 비영리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범주에 속합니다. 공정이용은 영리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영역을 크게 침범하지 않을 때 저작물의 사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설명은 기운실에서 발간한 “교회저작권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교회는 비영리적인 조건 하에서 저작권을 허락한 많은 영상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알아볼 CCL(Creative Contents License)을 통해서 수많은 사진과 음악, 폰트들을 영상에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 영상은 “메시지 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교회 영상은 영상으로서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보전달, 이해, 예화, 감동, 동기부여 등 그 영상이 가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메시지와 구성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의 효과는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트랜지션과 영상소스로 시선을 사로잡기보다는 예배의 컨셉과 목적에 맞는 정확한 메시지를 영상에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을 꿰뚫는 메시지가 정해지게 되면 수많은 저작권과 영상소스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조금 부실해도, 배경음악이 조금 밋밋해도,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도 회중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카피 하나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교회 영상은 제 목적을 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CCL이 무엇인가요?

CCL은 자신의 창작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재창작되면서 문화라는 인류 공동 자산의 일부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라이선스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금지하는 저작권법과 달리, CCL은 자신(저작권자)이 정한 몇 가지 조건과 이

용방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6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면 CCL이 허락된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저작자표시(BY)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p>
	<p>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은 가능하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p>
	<p>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p>
	<p>저작자표시-비영리(BY-NC)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p>
	<p>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p>
	<p>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p>

(출처: www.creativecommons.or.kr)

배경음악

영상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소스 중에 배경음악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작자의 동의도 없이 아무 음악이나 영상에 배경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저작권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고 배경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기존의 기성음악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 나와있는 음악을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원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음원의 작곡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서 동의를 구해도 좋겠지만, 일일이 찾기는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음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허락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이 곳에서 먼저 "작품검색"을 통해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음원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사용승인 안내" 페이지를 클릭하여 본인의 용도에 맞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 아마추어의 음악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는 아마추어 작곡가들의 곡을 허락받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Free BGM(http://freebgm.net)

이 곳은 아마추어 작곡가들이 모여서 각자가 작곡한 곡을 공개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작곡가라고 해서 음악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다양하고 감성적인 곡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있는 곡들을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곡이 있다면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원작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사용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비영리적인 용도의 경우(교회영상제작이나 공모전 출품, 단편영화제작 등) 영상 크래딧에 음악제목과 원작자표기만 해주면(지적인격권 표기) 대부분 사용을 허락해 줍니다.

자멘도(www.jamendo.com)

이 곳은 세계 최대의 음악공유사이트입니다. 간단한 회원가입을 마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아마추어 작곡가들이 직접 만든 음악을 들어볼 수 있고 다운받을수도 있습니다. 곡에 대한 사용은 각 음악과 함께 명시되어 있는 "CCL"을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영상에 사용할 이미지도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매 작업마다 필요한 사진을 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유료로 사진을 구입하거나 CCL을 지켜 무료로 사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리커(www.flickr.com)

대표적인 사진 공유 사이트. 하루에도 수만장의 사진들이 전세계사람들로부터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고급검색"을 통해 "CCL"별로 올라와있는 사진들을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카사 웹앨범(<http://picasaweb.google.com>)

구글에서 운영하는 웹앨범입니다. 역시 방대한 양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각 사진을 밑에 CCL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뉴스뱅크 이미지(<http://image.newsbank.co.kr>)

각종 언론과 신문사의 사진들이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CCL에 따라 개인의 저작활동 내에서 무료로 사진이 제공됩니다. (각 사진을 밑에 CCL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격표에 따라 값을 지불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폰트]

영상을 제작할 때는 폰트도 저작권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유료 폰트를 다운받아서 영상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각 기관이나 회사에서 무료폰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폰트를 잘 활용하여도 감각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눔글꼴-나눔명조

<http://hangeul.naver.com/index.nhn?goto=fonts#fonts>

다음, 다음체

<http://fontevent.daum.net>

윤폰트, 한글상상체

<http://yoonfont.co.kr/2008ss>

중앙일보, 중앙폰트

http://images.joins.com/ui_jmn/new090227/joongangfont.zip

한겨레신문사, 한겨레결체

http://www.hanmalgal.org/bbs/zboard.php?id=morgu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ange=headnum&desc=asc&no=19

서울시, 서울서체

<http://design.seoul.go.kr/dscontent/designseoul.php?MenuID=490&pgID=57>

대한인쇄문화협회, 바른돋움체-바른명조체

<http://www.print.or.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전용서체

<http://www.jeu.go.kr/contents/index.php?mid=010212>

한글과 컴퓨터, 함초름체

<http://www.haansoft.com/hnc/event/ham/index.htm>

교회영상, 결국 네트워크가 답이다.

이렇게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신뢰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네트워크가 그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영상의 대부분은 배경음악에 CCM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저작권을 지키며 CCM을 사용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위의 CCM사역자들을 만나보면 비영리적인 목적의 영상에는 자신의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대신 엔딩크레딧에 배경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표기함으로써 저작 인격권만을 지켜달라는 의미이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이런 음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플리커나 피카사가 그렇듯이 기독교 이미지를 담은 사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인터넷에 올리고 CCL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영상만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히 영상소스를 무료로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통의 장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작하는 영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각각의 영상소스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더이상 창작자들의 수고가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널리 알려지고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기독교 문화콘텐츠 창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각 교회에서 제작된 영상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콘텐츠의 발전은 더 많은 영상콘텐츠들이 한곳에 모일 때에 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고 끝나는 영상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 속에서, 나아가 일반 사회의 학교와 기관에서 사용되는 “착한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교회영상의 네트워크 공간을 꿈꿔봅니다.

1998년 설립된 문화선교연구원은 기독교 문화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의 시대에 건강하고, 균형있는 기독교 문화의 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현장과 교회현장에서 기독교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문화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연구활동 그리고 교회와 문화계 현장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변혁적 기독교문화를 연구, 실천하는 활동을 추구합니다.

○ 연구활동

'기독교 문화 학술 심포지엄 및 포럼' 개최, 학술연구 프로젝트, 기독교문화비평, 연구서적 출간 ("기독교 문화, 소통과 변혁을 향하여", "기독교 문화와 상상력",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소비 문화 시대의 기독교",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감성세대의 영화일기" 등)

○ 교육활동

기독교 문화교실, 교육자료 개발, 교육영화제작 '몽당연필'(2000), '하교길'(2001), '열쇠'(2003), '내 친구'(2004), '마이티맨'(2005), '엄지손가락/홀라당거북이'(2005), '미녀는 KIN거워'(2006), '랄랄라'(2007), '샤랄라 놀이터'(2008), '매직캔디'(2009), '하이! 조이'(2010), '듀오'(2011)

○ 문화생산활동

서울기독교영화제(2003년부터 시작), 격월간 기독교문화매거진<오늘> 발행(2003년 창간) 총 59호, CAM기독교만화공모전, '기쁨의 부활절 50일' 문화 프로젝트창작뮤지컬 제작 <아리마대요셉의 고백, 2006>, <Peter, 2007>, <아주 특별한 초대, 2008>, <가연아, 사랑해, 2009>, <그사람 바보의사 장기려, 2011>

○ 섬기는 이들

- 명예이사장 : 서정운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총장)
- 이 사 장 : 장경덕 목사(가나안교회 담임목사)
- 원 장 : 임성빈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문화 / 문화매거진 <오늘> 발행인)
- 책임연구원 : 백광훈 목사
- 기획 간사 : 이재운 전도사
- 행정간사 : 조미수
- 편 집 장 : 김준영 전도사
- 기 자 : 정미희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197-15 Tel_ 02-743-2535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아무리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해도, 도덕적 수준도 낮다면 살만한 좋은 사회가 아니죠.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운동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장규 공동대표(창립발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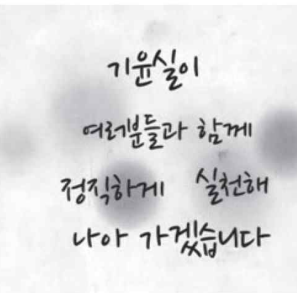


기윤실은 지난 20여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기윤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한국 사회 앞에 서서 묻습니다. **'앞으로 기윤실은 어떤 운동을 펼쳐나가야 하는가?'**

- "처음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손봉호 자문위원장
-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동원 이사장
-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박은조 공동대표
-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백종국 공동대표
- "교회의 회복은 신앙인다운 결단과 실천을 할 때 시작됩니다" 임성빈 공동대표
- "이 시대의 절박함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전재중 공동대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이 여러분과 함께 정직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윤실 소개영상 바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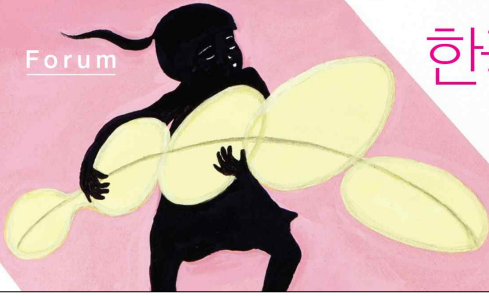
- **이사장** :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목사) ■ **공동대표** : 박은조(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장규(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외문화 교수), 전재중(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일정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후원문의_ 02-794-6200 / 후원계좌_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E-mail_ cemk@hanmail.net

Forum



한국교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11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 청어람3실
공동주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Christan
Ethics
Movement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문화선교연구원
www.cricum.org